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지광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1
----------	-----

발의연월일: 2019년 8월 16일

발 의 자: 지광천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4조 ~ 제5조)
- 다. 교통안전 교육(안 제6조)
 -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육
- 라.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지도요청 (안 제7조)
 -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굣길, 지역 축제 등
- 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안 제9조)
 -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비 등 교통수단 이용 지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입법예고 : 2019. 7. 31 ~ 8. 16 (17일간)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19. 7. 5. ~ 7. 19, 제출의견 없음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

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통질서 지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지역축제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한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

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도와 시·군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도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効)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8조(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지광천 의원
연락처	(033) 330 -2506